

속초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8

제출년월일 : 1994. 2.

제 출 자 : 속 초 시 장

□ 제 안 이 유

- 가.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 13958호 : '93. 8. 14) 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등을 정하고,
- 나. 도로점용의 각종 기준을 제시함으로 점용 신청을 쉽게 함은 물론 점용료 징수의 체계화로 업무를 신속 명확하게 하여
- 다. 도로점용의 경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 요 골 자

- 가. 점용료의 산정을 위한 토지의 가격은 종전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은 점용장소 인근유사 토지의 최근 공시지가로 하여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 나.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 24조 제 5항 각조의 1 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함(안 제2조)
- 다. 점용료의 종류별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안 제3조)
- 라. 도로를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하는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율에 따라 당해년도 점용료를 조정하도록 함(안 제4조)

마. 도로점용료의 감면대상자 그 비율을 정함(안 제5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장이 정하는 공익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 사업 : 전액 면제
- 재해, 기타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감면 비율을 규칙으로 정함
- 전기공급, 전기통신시설, 송유관등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
하는 사업 : 50퍼센트 감액

바.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 6조)

-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토록 함.
- 점용료의 금액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함.

□ 관 련 근 거

- 도로법 제43조 제 2항 (점용료의 징수)

□ 첨 부

- 관계법령 발췌 1부.
- 시정조정위원회 부의결과 1부.
- 입법예고 결과 보고서 1부.

속초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 제 1 조 (목 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 (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 제 3 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43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제 4 조 (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제 5 조 (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44조 제 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 사업을 말한다.
- ② 법 제44조 제3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44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법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1의 금액을 감면한다.

제 6 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년도 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개월 이내 부과·징수한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 7 조 (점용료의 반환)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 8 조 (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도로법 시행령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 9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접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접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점 용 료 산 정 기 준 표

단 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공중전 화·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전 주		1 개	1 년	600
	전주와 유사한 것				900
	공 중 전 화				24,100
	송전탑 및 기타의 것		점용면적 1 m ²	1 년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2. 수도관·하수 도관·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 하수도 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전기관· 통신 시설관	직경 0.1m 이하	길이 1 m	1 년	150
		직경 0.1m 초과 0.2m 이하			300
		직경 0.2m 초과 0.4m 이하			600
		직경 0.4m 초과 0.6m 이하			900
		직경 0.6m 초과 0.8m 이하			1,200
		직경 0.8m 초과 1.0m 이하			1,500
		직경 1m 초과			3,000
	기타의관	직경 0.1m 이하	길이 1 m	1 년	200
		직경 0.1m 초과 0.2m 이하			450
		직경 0.2m 초과 0.4m 이하			900
		직경 0.4m 초과 0.6m 이하			1,350
		직경 0.6m 초과 0.8m 이하			1,800
		직경 0.8m 초과 1.0m 이하			2,250
		직경 1m 초과			4,500

3. 광고탑 · 광고판 · 간판 · 사설 안내표지 · 현수막 · 아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 광고판 · 간판	일시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일	100
		기 타	표시면적 1 ㎡	1년	15,000
	사 설 안 내 표 지		1 개	1년	12,500
	현수막	계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점용면적 1 ㎡	1일	50
		기타의 용도			100
	아 취	도로횡단	표시면적 1 ㎡	1년	30,000
		기 타			15,000
4. 주유소 · 주차장 · 여객자동차 터미널 · 화물 터미널 · 자동차수리소 · 승강대 · 화물적치장 ·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	1년	토지 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 가격에 0.055를 곱한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 가격에 0.06를 곱한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 가격에 0.065를 곱한금액
	진 입 로		토지 가격에 0.025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 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5. 철도 ·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	1년	토지 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통로 지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m ²	1년	토지 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 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3층 이상인 건 축 물			토지 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 하는 통로				토지 가격에 0.0075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 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7. 노점·자동판 매기·상품진 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 판매대 · 구두 수선대		점용면적 1 m ²	1년	토지 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 진열대				토지 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 공사용 관자벽 ·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m ²	1일	100
	기 타			1년	토지 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m ²	1년	토지 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의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점용면적 1 m ²	1년	토지 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 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1. 토지 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분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 면적등이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등의 표시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 단위가 1년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50원 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단위당 금액은 10원 단위로 끊어서 산정한다.(기간 단위가 1년인 경우의 예 : 1,455원 = 1,400원, 1,995원 = 1,950원)
6. 위 표의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7.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점용료 조정산식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0/100 + (증가율 - 10/100) × 3/10}]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3/100 + (증가율 - 20/100) × 1/10}]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6/100 + (증가율 - 30/100) × 2/10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9/100 + (증가율 - 50/100) × 3/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22/100 + (증가율 - 100/100) × 1/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25/100 + (증가율 - 200/100) × 1/10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25/100 + (증가율 - 500/100) × 5/1000}]